

특정 감사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사·용역분야 특정감사 —

2021. 11.
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천 원)

번호	소 관	건 명	행정상 조치		재 정 상 조 치					
			시정	주의	회수	금액	감액	금액	추징	금액
계		건	0	1	0	0	0	0	0	0
1	◇◇◇◇◇◇◇◇ (♣♣♣♣♣)	부당한 과업지시서 개선 미이행 및 용역분야 청렴이행 평가 자체점검 소홀	-	1	-	-	-	-	-	-

2. 처분요구일람표

- 부당한 과업지시서 개선 미이행 및
용역분야 청렴이행 평가 자체점검 소홀(주의) 1

일련번호	1	감사자		공개(○), 비공개()
신분상 조치인원				
수감부서(처리부서)				

경 상 북 도

주 의 요 구

제 목 부당한 과업지시서 개선 미이행 및 용역분야 청렴이행 평가 자체점검 소홀

소 관 청 경상북도◇◇◇◇◇◇◇◇

관 계 부 서 ♣♣♣♣♣

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「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9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리고 0000. 0. 00. 감사관실에서는 아래 [표 1]과 같이 ‘상하 관계를 연상시키는 갑을(甲乙) 용어를 사용’하거나, ‘계약진행 중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’의 불합리한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통보¹⁾하였다.

1)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사·용역분야 특별점검 결과 통보(감사관-00000호, 0000. 0. 00.)

[표 1] 개선 대상 과업내용 및 방안

개선 대상 과업내용	개선방안(요약)
상하 관계를 연상시키는 ‘갑을(甲乙)’이란 용어사용	발주관서(기관), 계약상대자
계약진행 중 문제를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지도록 규정	민·형사상 피해사항에 대한 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

또한, 0000. 0. 00. 감사관실에서는 「2021년 제2차 공사·용역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점검 및 특정감사 계획」을 각 부서에 통보²⁾하면서 청렴이행 평가표를 참조하여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, 추후 특정감사 시 자체점검 결과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문책 대상임을 주지한 바 있다.

그러므로, 각 부서에서는 용역계약 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고, 과업지시서 작성 시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였어야 하며, 특정감사 전 부서별 자체점검 시 청렴이행 평가표를 활용하여 과업지시서 상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어야 한다.

그런데, ◇◇◇◇◇◇◇◇ ◇◇◇◇◇◇에서는 아래 [표 2]와 같이 ‘△△△△용역’과 관련하여 부당한 ‘갑을(甲乙) 용어 사용’ 및 ‘문제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’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계약을 시행하였으며,

부서 자체점검 시 ‘갑을(甲乙) 용어 사용’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‘자체 개선’ 의견을 제출 하였으나, ‘문제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’이 과업지시서 상에 포함되었음에도 ‘해당없음’으로 점검결과를 제출³⁾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.

2) 감사관-00000호(0000. 0. 00.)

3) 2021년도 제2차 공사·용역분야 특별점검 실시결과 제출(운영지원과-0000호, 0000. 0. 00.)

[표 2] 용역계약 관련 부당한 과업 지시서 개선 미이행 및 자체점검 소홀 사항

(단위 : 천 원)

부서	사업명	계약체결일/ 계약만료일/ 계약금액	과업지시서 상 부당한 내용	자체점검 결과 (부당내용 여부)	담당자/ 점검자
◇◇ ◇◇ ◇	△△△△용역	0000-00-00/ 0000-00-00/ 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..전문유지보수 관리업체 (이하 “을”이라한다)... 경상북도◇◇◇◇◇◇◇◇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... ...본 계약을 “을”과 협의 없이 파기 할 수 있으며 ...모든 민사상 문제는 “을”이 책임진다... 		□□□ ○○○/ □□□ ○○○

조치할 사항 경상북도◇◇◇◇◇◇◇◇장은

- ① 앞으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시 부당한 과업지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시고,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사·용역분야 등의 자체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(주의)